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05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5호(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49호
(어선 청보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어선 청보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강**(*** ***)

인***** *** ***** ***, ***** ** ***-*****

귀하가 소유한 청보호가 과도한 어구를 싣고 경사진 상태로 항해하다가 기관실 개구부로 유입된 해수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하여 2023. 2. 4. 23:22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방 약 9해리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검사받지 않은 구조물, 잘못된 기관실 개구부 설치, 과도한 어구 적재와 선체 경사, 항해 당직자의 당직 소홀 등이 합쳐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장에게 적정한 복원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시설과 장비를 증설·추가한 것이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귀하가 관리하는 선박이 검사받지 않고 증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장에게는 정확한 복원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